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저작권법 개정

2014년 9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에서는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을 부여하였고 저작재산권에서는 저작의 출판, 복제, 번역, 변형 등의 형태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권리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게임, 전통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변형/수정물, 디지털형식으로 제작된 데이터 또는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공동저작권자 등이 공동저작권관리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공동저작물의 이익 분배 등을 할 수 있도록 "one stop royalties collection"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사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정" 발효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Regulation No. 69 of 2014"를 발효하여 외국인 투자를 받은 사교육 서비스업 사업자(외국인 투자법인, PT PMA)는 교육문화부로부터 사교육 서비스업 운영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받은 직업 관련 사교육 서비스업 사업자의 경우 위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직업 관련 교육'은 컴퓨터, 외국어, 미용 및 기타 직업 관련 교육을 의미하여 이에 대한 사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사업본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위 면허를 사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위 면허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① 외국인 투자법인의 정관 ② 지방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③ BKPM으로부터 받은 투자허가서입니다.